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75,520,305	29,265,609
일반회계	879,411,264	26,382,338
특별회계	82,390,596	2,471,718
기타특별회계	82,390,596	2,471,718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76,458,410	2,293,752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732,664	21,980
공원관리특별회계	1,304,954	39,14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894,568	116,837
기금	13,718,445	411,553
식품진흥기금	120,600	3,618
재난관리기금	1,489,673	44,690
지역발전기금	1,108,962	33,26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127,125	183,814
자활기금	1,168,570	35,057
고향사랑기금	405,015	12,150
신안군장학재단지원기금	3,088,500	92,655
옥외광고발전기금	210,000	6,300

제 2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4,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지방채, 원금상환과 금리변동 등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의 제2항 규정에 의한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재,개폐로 인하여 부서 간 직무권한의 변경이 있을때에는 예산을 상호 이체한다